**1962년 법률 제134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목차

1. 총칙 (제1조-제3조)
2.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
3.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부당한 표시의 금지 (제4조-제6조)
4. 조치명령 (제7조)
5. 과징금 (제8조-제25조)
6.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제26조-제28조)
7. 보고의 징수 및 입회검사 등 (제29조)
8.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권 등 (제30조)
9. 협정 또는 규약(제31조 · 제32조)
10. 잡칙 (제33조-제35조)
11. 벌칙 (제36조-제41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상품 및 역무의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대해 정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사업자”란 상업, 공업, 금융업 및 기타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사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외의 자는 다음 항 및 제31조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이를 해당 사업자로 간주한다.

2. 이 법률에서 ”사업자단체”란 사업자로서의 공통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단, 둘 이상의 사업자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서 자본 또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40조에서 같다)의 출자를 보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 공업, 금융업 그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현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원(사원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일반사단법인 및 그 외 사단

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이사 또는 관리인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그 존립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재단법인, 그 외 재단

삼. 둘 이상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또는 계약에 의한 둘 이상 사업자 결합체

3. 이 법률에서 ”경품류”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추첨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그 외 경제상의 이익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표시”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 그 외 이들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하는 광고 및 그 외 표시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품류 및 표시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제3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거나, 그 변경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관계사업자 및 일반의견을 요구함과 동시에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지정 및 그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해 실시한다.

**제2장**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

**제1절**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부당한 표시의 금지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제4조** 내각총리대신은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품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 방법, 기타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금지)

**제5조** 사업자는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대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일.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실제의 것보다 상당히 우수함을 나타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표시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실제 또는 해당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거래의 상대방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되는 표시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삼.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부당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제6조** 내각총리대신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혹은 금지 또는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변경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관계사업자 및 일반의견을 구함과 동시에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제한 및 금지, 지정, 이들의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해 실시한다.

**제2절** 조치명령

**제7조** 내각총리대신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혹은 금지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그 행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들의 실시와 관련된 공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은 해당 위반행위가 이미 사라진 경우에도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이.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되었을 때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삼.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분할에 의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법인

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사업자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해, 사업자가 한 표시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표시를 한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동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해당 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간주한다.

**제3절** 과징금

(과징금 납부 명령)

**제8조**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시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과징금 대상행위”라고 한다)를 했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과징금 대상기간에 거래를 한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해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라고 명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자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기간을 통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금액이 150만엔 미만일 때는 그 납부를 명할 수 없다.

일.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그 외 내용에 대해서, 실제의 것보다 상당히 우량한 것 또는 사실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와 동종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된 것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표시

이.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에 대해, 실제의 것보다 거래 상대방에 상당히 유리한 것 또는 사실과 달리 해당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히 유리함을 나타내는 표시

2. 전항에 규정하는 ”과징금 대상기간”이란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기간(과징금 대상행위를 그만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동일 전에 해당 사업자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 날)까지 사이에 해당 사업자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를 했을 때는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그만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당 거래를 한 날까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해당 기간의 말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년으로 한다)을 말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과징금 납부명령”이라고 한다)에 관해, 사업자가 한 표시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표시를 한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동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해당 표시를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추정한다.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에 의한 과징금 감액)

**제9조** 전조 제1항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사업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한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해당 과징금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단, 그 보고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한조사가 있었음에 따라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해 과징금납부명령이 있어야 함을 예지하여 된 것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불조치의 실시에 의한 과징금 감액 등)

**제10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징금 대상기간에 해당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를 한 일반소비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특정된 것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일반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구입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 이상의 금전을 교부하는 조치(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환불조치”라고 한다)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하고자 하는 환불조치(이하, 이 조에서 ”실시예정 환불조치”라고 한다)에 관한 계획 (이하, 이 조에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이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일.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이.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삼.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3.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는 제1항의 인정 신청 전에 이미 실시한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자에게 교부한 금전의 금액 및 그 계산방법, 그 외 해당 신청 전에 실시한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할 수 있다.

4. 제1항의 인정 신청을 한 자는 해당 신청 후 이에 대한 처분을 받기까지 환불조치를 실시했을 때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자에 대해 교부한 금전의 금액 및 그 계산방법, 그 외 해당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5.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이 다음 각호의 어느 쪽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일.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가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일 것.

이.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보고에 관한 환불조치가 실시된 자를 포함한다) 중 특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것일 것.

삼.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기재된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실시기간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일 것.

6.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인정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인정에 대해 준용한다.

8.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사업자에 의한 환불조치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이라고 한다)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인정(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10항 단서에서 단지 ”인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해야 한다.

9.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을 했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취소했을 때는 신속하게 이들의 처분 대상자에게 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10.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했을 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기한까지는 인정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할 수 없다. 단,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인정사업자(전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인정(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정을 포함한다)가 취소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는 동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환불조치의 결과에 대해, 해당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기재된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실시기간의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근거해, 전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가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환불조치(해당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보고에 관한 환불조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교부된 금전의 금액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해당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징금에서 감액한 금액이 0을 밑돌 때는 해당 금액은 0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액이 1 만엔 미만이 되었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정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신속하게 해당 인정사업자에게 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한다.

(과징금의 납부의무 등)

**제12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 제9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8조 제1항, 제9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에 1만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때는 그 끝수를 버린다.

3.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했을 때, 해당 법인이 한 과징금 대상 행위는 합병 후 존속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과징금 대상행위 로 간주하며, 제8조에서 전조까지 및 전2항 및 다음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징수 등(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장부서류, 그 외 물건 제출의 명령, 입회검사 또는 질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처음으로 행해진 날(해당 보고징수 등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법인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이하, 이 항에서 “조사 개시일”이라고 한다) 이후에 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회사 등(사업자의 자회사 혹은 모회사(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 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대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해당 법인(회사로 한정한다)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사안에 대한 조사 개시일 이후에 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회사 등에게 분할에 의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게 하고,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소멸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이 한 과징금 대상행위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거나 또는 분할에 의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라고 한다)이 한 과징금 대상행위로 간주하여, 제8조에서 전조까지 및 전3항의 규정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둘 이상일 때는 제8조 제1항 중 ”해당 사업자에 대해”는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과 연대하여”로, 제1항 중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은 ”받은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 자회사 등과 연대하여 동항”으로 한다.

5. 전항에 규정하는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 주주(총 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경우에 같다)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및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가 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는 회사의 자회사로 간주한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9조에서 전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7. 과징금 대상행위를 그만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없다.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변명 기회의 부여)

**제13조**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려고 할 때는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의 수령인이 되어야 하는 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명 기회의 부여 방식)

**제14조** 변명은 내각총리대신이 구두로 인정한 때를 제외하고, 변명을 기재한 서면(다음 조 제1항에서”해명서”라고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2. 변명을 할 때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변명기회부여 통지방식)

**제15조** 내각총리대신은 해명서의 제출기한(구두에 의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과징금 납부명령의 수령인이 되어야 하는 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 납부를 명하고자 하는 과징금액

이. 과징금 계산의 기초 및 해당 과징금과 관련된 과징금 대상행위

삼. 해명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구두에 의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출두해야 하는 일시 및 장소)

2.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수령인이 되어야 하는 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그 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동항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내각총리대신이 동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언제든지 그 자에게 교부하는 취지를 소비자청 사무소의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었을 때, 해당 통지가 그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

**제16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동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해당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4항에서 ”당사자”라고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위해, 변명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해당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방식 등)

**제17조** 과징금 납부명령은 문서로 하며, 과징금 납부명령서에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액, 과징금 계산의 기초 및 해당 과징금과 관련된 과징금 대상행위 및 납기한을 기재해야 한다.

2.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수신인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일으킨다.

3. 제1항의 과징금 납기한은 과징금 납부명령서의 등본을 발하는 날부터 7개월이 경과된 날로 한다.

(납부의 독촉)

**제18조**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을 그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독촉장에 따라 기한을 지정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경우 그 독촉과 관련된 과징금에 대해 연14.5 퍼센트의 비율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납부일까지 일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연체금이 천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액에 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그 끝수는 버린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제1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하는 기한까지 그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은 민사집행법(1979년 법률 제4호) 그 외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소 또는 공적/사적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과징금 등의 청구권)

**제20조** 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민사재생법(1999년 법률 제225호), 회사갱생법(2002년 법률 제154)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 제95호)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된 과징금의 청구권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청구권은 과태료 청구권으로 간주한다.

(송달서류)

**제21조**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22조**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99조 제1항 중 ”집행관”은 ”소비자청의 직원”으로, 동법 제108조 중 ”재판장” 및 동법 제109조 중 ”법원”은 ”내각총리대신”으로 갱신한다.

(공시송달)

**제23조**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일.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 거소, 그 외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모를 경우

이.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대해,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또는 이에 따라 송달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경우

삼.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발한 후 6월이 경과되어도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을 경우

2. 공시송달은 송달해야 하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교부해야 하는 내용을 소비자청 사무소의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실시한다.

3. 공시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한 공시 송달에 있어서, 전항의 기간은 6주간으로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제24조** 소비자청의 직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3조 제9호에 규정하는 처분통지 등으로 이 절 또는 내각부령의 규정에 의해 서류 송달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에 관한 사무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해 실시했을 때는 제2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사항을 해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소비자청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제25조** 내각총리대신이 하는 과징금납부명령, 그 외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관한 동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제26조** 사업자는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대해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품류 가격의 최고액, 총액, 기타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그 외 내용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그 외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하,”지침”이라고 한다)를 정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협의함과 동시에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지침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지도 및 조언)

**제27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조치에 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공표)

**제28조** 내각총리대신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반대로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의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절** 보고의 징수 및 입회검사 등

**제29조** 내각총리대신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그 업무 혹은 재산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사업자 혹은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에 입회, 장부서류 및 기타 부동산을 검사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며,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적격 소비자 단체의 금지 청구권 등

**제30조** 소비자계약법(2000년 법률 제61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적격 소비자 단체(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단지 “적격 소비자 단체”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가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표시를 한 것임을 주지, 기타 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일.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실제 또는 해당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된 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것.

이.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실제 또는 해당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거래 상대방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것.

2. 소비자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11조의 7 제1항에 규정하는 소비생활협력단체 및 소비생활협력원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에게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 적격 소비자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적격 소비자 단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 제공을 받은 적격 소비자 단체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권리의 적절한 행사 용도로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장** 협정 또는 규약

(협정 또는 규약)

**제31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또는 규약을 체결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다.

2.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협정 또는 규약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니면 동항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것.

이.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삼.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사. 해당 협정 또는 규약에 참가하거나, 또는 해당 협정 또는 규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말 것.

3.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이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5.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동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1항, 제70조의 4 제1항과 제7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 및 이에 근거하여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의)

**제32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을 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잡칙

(권한의 위임 등)

**제33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2. 소비자청 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소비자청 장관은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 또는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 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5.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금융청 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다음 항에서 ”금융청 장관 권한”으로 총칭한다)에 대해, 그 일부를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금융청 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청 장관 권한(전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된 것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을 지휘 감독한다.

10. 제6항의 경우,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실시하는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제8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청구는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내각부령에 위임 등)

**제34조**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2. 제32조의 규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전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제31조 제1항의 협정 또는 규약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 준용한다.

(관계자 상호 연계)

**제35조** 내각총리대신, 관계행정기관의 장(해당 행정기관이 합의제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장, 기타 관계자는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며, 그 외 상호 밀접한 연계 확보에 노력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 보고 혹은 허위 물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각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일. 제36조 제1항 - 3억엔 이하의 벌금형

이. 전조 - 동조의 벌금형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인이 그 단체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각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 제36조 제1항 - 3억엔 이하의 벌금형

이. 전조 - 동조의 벌금형

3. 전항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그 단체를 대표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소송행위에 관한 형사소송법(1948년 법 제13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제36조 제1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 계획을 알면서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위반 행위를 알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동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40조** 제36조 제1항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 계획을 알면서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위반 행위를 알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사업자 단체의 이사, 기타 임원 혹은 관리인 또는 그 구성 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외의 자가 구성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각각 동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의 이사, 그 외 임원 혹은 관리인 또는 그 구성 사업자가 법인,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이사, 그 외 임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41조**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동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한 적격소비자 단체는 30만엔 이하의 과금에 처한다.

**부칙 발췌**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또는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청회는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칙 (1972년 5월 30일 법률 제44호)**

이 법률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년 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령에 기초하여 심의회, 그 외 합의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 부여 절차, 그 외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에 대한 자문, 그 외의 요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그 외 요구에 관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해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법률 상당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정령에 위임)

**제15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50조 다음에 5조, 절명과 2관 및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규정(동법 제250조의 9 제1항에 관한 부분(양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제40조 중 자연공원법 부칙 제9조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 3의 개정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 단서,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160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202조의 규정 – 공포일

(국가 등의 사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 관리 또는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 그 외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서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한다.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된 국가 등의 사무와 관련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된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동법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처분청에 이어서 상급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일 때는 해당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2조** 시행일 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각 법률(이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이에 근거하는 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그 외 경과조치의 정령에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250조** 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신 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 열거하는 것 및 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정령에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여 적절하게 재검토를 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 방도에 대해,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 (2000년 5월 19일 법률 제76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은 2001년 1월 6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5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개정규정,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제4조”를 ”제4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에 의한 개정 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은 전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을 시행한 후에 한 표시에 대해 적용하며, 동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한 표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신법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을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배제명령에 대해 적용하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배제명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신법 제9조의 2의 규정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사라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령에 위임)

**제5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5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 시행일 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1993년 5년 법률 제88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개시결정서의 등본송달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배제명령의 절차 및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및 신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8년 5월 2일 법률 제29호) 발췌**

(시행기일)

1. 이 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2009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 부칙 제9조의 규정 - 이 법의 공포일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 법률(이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구 법령”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진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및 기타 행위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 외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신 법령”이라고 한다)의 상당 규정에 의해 행해진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및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2. 이 법률을 시행할 때, 현재 구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면허의 신청, 신고, 그 외 행위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신 법령의 상당 규정에 의해 행해진 면허의 신청, 신고,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3.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고, 신고, 제출, 그 외 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 외,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는 이를 신 법령의 상당 규정에 의해 그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발해진 내각부 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외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는 신 법령의 상당 규정에 근거하여 발해진 상당의 내각부 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이 조에서 ”구 경품표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해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이 조에서 ”신 경품표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해진 내각부 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구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는 시행일에 내각총리대신이 한 신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로 간주한다.

3. 신 경품표시법 제6조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행해진 구 경품표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혹은 금지 또는 구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시행일 전에 구 경품표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된 경우 그 명령 및 해당 명령에 관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의 규정 적용 및 해당 명령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4. 이 법률을 시행 시 현재 구 경품표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은 시행일에 신 경품표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으로 간주한다.

5. 시행일 전에 구 경품표시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 있어서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 예에 따른다.

(정령에 위임)

**제9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23년 12월 13일 법률 제100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은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의 원칙)

**제5조** 행정청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서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법률 규정에 의해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기타 행위를 거친 후가 아니면 호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으로서, 해당 불복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이 법률을 시행하지 전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해당 불복 신청이 다른 불복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기타 행위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불복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 한 것을 포함한다)의 호소 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법률 규정 (전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처분, 그 외 행위로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법률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취소의 호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의 취소 호소 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불복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그 외 행위의 취소 호소로서,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5조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위임)

**제10조** 부칙 제5조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71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 다음 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 - 공포일

이. 제1조 중 부당경품 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0조의 개정규정 및 동법 본칙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2조의 규정(다음 호에 열거하는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3조 및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침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 위임)

**제5조** 이 부칙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6조** 정부는 이 법률을 시행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이 법률 규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 (2014년 1월 27일 법률 제118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2장 제3절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7조에서 ”시행일”이라고 한다) 이후에 행해진 신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징금 대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정령에 위임)

**제3조**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4조** 정부는 이 법률을 시행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신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조정 규정)

**제7조** 시행일이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69호)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중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2조 제10항의 개정규정 중 ”제12조 제10항”은 ”제33조 제10항”으로 한다.

**부칙 (2019년 5월 31일 법률 제16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년 5월 25일 법률 제48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4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 제3조의 규정 및 부칙 제60조 중 상업등기법(1963년 법률 제125호) 제52조 제2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125조의 규정 – 공포일

(정령에 위임)

**제125조** 이 부칙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시행기일)

일. 이 법률은 형법 등 일부 개정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5월 17일 법률 제29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 부칙 제4조의 규정 – 공포일

이.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 -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정령에 위임)

**제4조** 전2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